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6. 12. 6.
행정재무위원회

1. 審 査 經 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6년 11월 16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1996년 11월 19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46회 정기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상정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윤정중)

- 가. 제안이유
 -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음반·비디오물판매, 대여업에 관련된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와 효율적인 업소관리가 이루어 지도록 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현행 관련법상 구청장 권한으로 되어있는 음반·비디오물 판매, 대여업의 등록, 등록사항 변경 신고, 등록증교부, 폐업신고, 등록취소등에 관한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코자 영등포구청권한위임조례 제5조 제1항의 <별표>에 구청장 권한위임 사무를 추가 신설함.

3.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 허 영훈)

동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등) 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례의 제1조(목적)에서 보면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략>...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6. 10. 31. 기준 우리구에 등록한 음반및비디오물유통관련업소는 531개소로서 신규등록, 등록사항변경, 등록취소, 등록증교부 및 폐업신고처리등의 업무량은 타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1인의 업무량으로는 과중하고 등록업소의 사후관리가 불가능 하다고 생각되므로 행정의 능률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또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서도 구청장의 권한을 동장에게 권한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됨.

4. 審 査 結 果 : 원 안 의 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4
----------	----

제출년월일 : 1996. 11. 16.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음반·비디오물 판매, 대여업에 관련된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와 효율적인 업소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현행 관련법상 구청장 권한으로 되어있는 음반·비디오물 판매, 대여업의 등록,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록증교부, 폐업신고,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코자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 제1항의 [별표]에 구청장 권한위임 사무를 추가 신설

3. 참고사항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등)
- 예산조치 : 필요없음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위임사무중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15.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에 관한 사무		
가. 음반, 비디오물판매업, 비디오물 대여업 등록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7조	동 장
나. 음반, 비디오물판매업, 비디오물 대여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9조	동 장
다. 음반, 비디오물판매업, 비디오물 대여업 등록증 교부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0조	동 장
라. 음반, 비디오물판매업, 비디오물 대여업 폐업 신고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1조	동 장
마. 음반, 비디오물판매업, 비디오물 대여업 등록 취소등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2조	동 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안)		
[별 표]			[별 표]		
사 무 명	근거 법령	수입 기관	사 무 명	근거 법령	수입 기관
1~ 4. (생략)	(생략)	(생략)	1~1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5. (신설)	(신설)	(신설)	15. 음반및비디오물 유통 관련업 에 관한 사무		
			가. 음반·비디오물 판매업 비 디오물 대여업 등록	음반및비디오 물에관한법률 제7조	동장
			나. 음반·비디오물 판매업 비 디오물 대여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	음반및비디오 물에관한법률 제9조	동장
			다. 음반·비디오물 판매업 비 디오물 대여업 등록증 교 부	음반및비디오 물에관한법률 제10조	동장
			라. 음반·비디오물 판매업 비 디오물 대여업 폐업신고	음반및비디오 물에관한법률 제11조	동장
			마. 음반·비디오물 판매업 비 디오물 대여업 등록취소 등	음반및비디오 물에관한법률 제12조	동장